

# 國立大學 圖書館 運營改善方案

( 1986.12.29 建議 )

## 目 次

- |                         |                          |
|-------------------------|--------------------------|
| 1. 基準의 合理化              | 3. 圖書購入費 增額 및 豐算項目<br>新設 |
| 1) 司書職 策定基準             | 4. 圖書館業務 專擔部署 設置         |
| 2) 學術雜誌 種數              | 5. 司書職 手當 支給對象 擴大        |
| 2. 地方綜合大學校 圖書館 職制改<br>編 | 6. 圖書館法의 改正              |

## 머 리 말

大學圖書館이 그 本來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 하려면 業務 遂行에 關聯된 諸般 問題點들이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들은 内部的인 것보다는 圖書館 外의인 要因이 大部分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의회에서는 그 改善을 위하여 1979. 7.26 ( 국도제 2 호 ) 1979. 8.27 ( 국도 제 6 호 ), 1980. 9.30 ( 국도 제 20 호 ), 1981.7. 14 ( 국도 제 37 호 ), 1982. 9.29 ( 국도 82-21 ), 1984. 6. 1 ( 국도 84-18 ) 등과 같이 수차 建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多少 改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大部分의 重要한 問題들이 宿題로 남아 있는 實情입니다. 1984. 6. 1에 建議한 以來 第 36 ~ 38 次 總會 및 第 6 ~ 8 次 實務者 세미나에서도 계속 같은 問題點들이 提起되었으며 이의 改善을 위하여 다시 建議하는 것입니다. 今年初 大統領 簡下의 年頭教書에서 「... 매우 不足한 圖書館 施設을 劃期的으로 擴充하여 ...」 라고 밝히신 바와 같이 大學教育의 中權的 支援施設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도록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基準의 合理化

### 1) 司書職 策定基準

#### 가. 現況

- ① 司書職의 定員을 策定함에는 圖書館의 施設規模와 學生數, 藏書數, 年間增加冊數 및 奉仕內容 等의 要素들을 모두 考慮하여 策定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學生數 1 가지 要素만이 의하여 策定하였음。
- ② 學生數 500 名 以下인 境遇 司書職 2名을 두고 500 名을 超過하는 800 名마다 1 名의 司書職을 增員함.

#### 나. 問題點

- ① 藏書數, 年間增加冊數 및 奉仕內容等 定員策定基準의 重要한 要素들이 전히 考慮되지 않아 不合理하고 非現實的임.
- ② 職員不足으로 業務能率이 低調하고 奉仕內容이 不實하게 되어 教育 및 研究와 學生들의 勉學雰圍氣造成에 있어 問題點으로 提起됨.

#### 다. 改善案

學生數 1,000 名, 藏書數 50,000 冊을 基準으로 最低人員으로 10 名의 司書職員을 두되 基準超過하는 學生 1,000 名마다 1 名 藏書 20,000 冊마다 1 名, 그리고 年間 增加 5,000 冊마다 1 名 씩의 司書職員을 각各 增員함.

#### 라. 行政措置

圖書館法 施行令 改正

※ 司書職 所要人員들의 바람직한 算出公式

所要人員=基本所要人員+增員人員

基本所要人員=最低基準人員(10名)+超過所要人員

超過所要人員=學生數, 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藏書數 超過에 따른 超過所要人員

增員人員=年間藏書數, 增加에 따른 所要人員+其他要因으로 因한 所要人員

所要人員=N, 最低基準人員=10名,

學生數=a, 藏書數=b, 年間增加冊數=c

$$N = 10 + \frac{a-1,000}{1,000} + \frac{b-50,000}{20,000} + \frac{c}{5,000}$$

2) 學術雜誌種數

가. 現 行

學科當 10 ~ 15 種以上

나. 問題點

學術雜誌種數 基準이 非現實的으로 過少策定되어 있어서 基本의 인 學門研究의 支授이 困難함.

다. 改善案

學術雜誌種數는 學科當 學門系列別로 다음과 같이 함.

系 列 別	種 數
人 文	30 種 以 上
社 會 吳 自 然	50 種 以 上
家 政 吳 藝 體 能	20 種 以 上
醫 學	200 種 以 上

라. 行政措置

大學設置基準令改正

## 2. 地方綜合大學校 圖書館 職制改編

### 1) 現 行

收書課長은 行政事務官 · 整理課長은 司書官 ( 5 級 ) 으로 補함.

### 2) 問題點

司書職의 最上職級은 4 級까지로 되어있거나 地方에는 4 級 司書官으로 補할 수 있는 職制가 없어 昇進期待감이 없게되어 결국 전체 司書職의 土氣가 크게 低下되고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가 困難함.

### 3) 改善案

整理課長 및 閱覽課長은 4 級 또는 5 級 司書官으로 選擇的으로 補할 수 있도록 함.

參考 : 大學本部의 教務處 및 學生處 各課長은 書記官 또는 行政事務官으로 補하도록 되어있음.

### 4) 行政措置

國立學校 設置令 改正

## 3. 圖書購入費增額 및 豐算項目新設

### 1) 現 況

가. 圖書購入費는 各大學의 一般需用費나 一般資產取得費中에 둘여서 策定하고 이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期成會豫算中에 圖書館 經費를 策定

나. 大學經常費 ( 施設費 및 病院經費 除外 ) 에 대한 圖書購入費比率이 平均 1.6 % ( 1985 年度 ) 에 불과함.

### 2) 問題點

가. 藏書數의 絶對不足現象이 深化되어 効果的인 圖書館奉仕 가 困難함.

나. 大學設置基準令에 規定된 學術雜誌 및 學生 1 人當 3 冊의 確保도 不可能함.

## 3) 改善案

- 가. 圖書購入費項目을 獨立 新設
- 나. 大學經常費(施設費, 病院經費除外)의 5%以上으로 策定

## 4) 行政措置

國軍 및 期成會豫算編成指針에 明示

## 4. 圖書館 業務의 專擔部署 設置

## 1) 現況

圖書館은 그 種類에 따라 大學圖書館은 大學學務課, 公共圖書館은 社會教育制度課 校學校圖書館은 市道教育委員會, 그리고 特殊 圖書館은 각各 所管部處의 部署에서 管賞하고 있음

## 2) 問題點

各種 圖書館의 共通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各部署間에 意見調整  
이 困難하여 종합적인 圖書館 發展政策의樹立과 그 推進이 困難  
함.

## 3) 改善案

文教部內에 圖書館業務專擔部署로서 局 또는 課를 設置하여 專  
問職으로 하여금 圖書館 發展計劃을樹立하고 이를 強力히 推進케  
하며 各級圖書館을 指導監督 토록함.

## 4) 行政措置

文教部 職制改正

## 5. 司書職手當의 支給對象 擴大

## 1) 現況

公務員 手當規程中 改正令(1982. 2. 2. 大統領令 10711 號) 및  
地方公務員手當 規程中 改正令(1982. 2. 9. 大統領令 10723 號)  
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을 위시한 모든 公共圖書館 및 市立大學  
圖書館이 勤務하는 司書職 等 司書職의 大部分에게 司書職 手當  
이 支給되고 있으나 國立大學에 勤務하는 司書職은 支給對象에서

누락되어 있음.

2) 問題點

같은 司書職이면서도 또 같은 大學圖書館에 勤務하면서 國立大學에 勤務하는 司書職에게는 手當을 支給하고 있지 않아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고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3) 改善案

手當을 받지 못하고 一部司書職에게도 公平하게 手當을 支給함.

4) 行政措置

公務員 手當規程 改正

## 6. 圖書館法 改正

1) 問題點

圖書館法에서는 大學圖書館을 學校圖書館 範疇에 包含시키고 있어 그 特殊性이 度外視되고 있으며 現行 法規는 1963年에 制定된後 약 20여년 동안 한번도 改正된 바 없이 現實性이 如

2) 改善案

圖書館法上 大學圖書館에 관하여 1個章을 設置하고 大學圖書館의 設置, 施設, 藏書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따로 規定함으로써 그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強調함.

3) 行政措置

圖書館法 (1963.10.28. 法律 第 1424 號) 的 改正提案

\* 國立大學圖書館 運營 改善方案에 대한 회신  
 ( 학무 25210-162, 1987. 2. 5 )

건의 내용	회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직 정원책정 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시설 규모 장서수, 연간증 가 책수등을 감 안 책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 원 정책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등 사항은 경제기획원, 총무처 등 관계부 처의 협의와 사학재정등을 감안해야 할 사 항으로서 앞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시 참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잡지 종수의 학문 계열별 상향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 계열별 학술잡지 종수 기준의 상향조 정은 정부재정과 학교예산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종합대학교 도서관 직제 상향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학교 본부의 일부 과장과 단과대학 의 과장이 5급으로 보직되어 있음에 비추 어 부속시설인 도서관의 각 과장을 4급으 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곤란하며, 앞으로 대학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량을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구입비 증액 및 예산항목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구입비를 일시에 대학경상비(시설비, 병원경비 제외)의 5%이상 책정하는 것 은 정부 재정과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곤란 하므로, 도서구입비의 점진적인 증액을 추 진해 나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년 국고도서구입비 증액 : '86 대비 50%증액</li> </ul> </li> </ul>

	<p>— '87년 기성회 도서구입비 증액( 1인당 2만원 ) : '86년( 1인당 14,500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의 신축성등을 고려하여 예산 항목의 신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li> </ul>
○ 문교부내에서 도서관 업무 전담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문교부 직재개편시 전담부서 설치문제를 연구 검토하겠음.</li> </ul>
○ 국립대학 도서관 사서직에게 사서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에 종사하는 사서직에게도 사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무처 등 관계부처에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에 관한 별도의 장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학 도서관은 그 설치, 시설, 장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 외에도 국립학교 설치령이나 대학설치기준령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관계법령과 종합적으로 병행 검토하여 도서관법 개정을 검토하겠음.</li> </ul>